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안내문

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해주세요!

- 12월말 결산 법인의 '17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'18년 4월 3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·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
 -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·납부

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시 유의사항

-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·납부
 - 다만, 동일 특·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(區)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·납부
 - ※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①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, ②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순
 -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대상
-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
 -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「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」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
 - 하나의 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안분명세서 제출 불필요
 -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, 미제출의 경우는 무신고로 봄
 - ※ 「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」의 경우는 첨부서류(재무제표, 세무조정계산서) 제출 면제
-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·감면은 없음
 -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이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「지방세법」 및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불가
 - ※ 다만,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(0.9%, 1.2%)
-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·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
 - '14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세 수정신고시 법인지방소득세도 관할 자치단체에 수정신고를 해야함.
 - ※ '13년도 귀속분까지는 법인세 수정신고일, 결정·경정 고지서의 납부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납부세액(가산세가 포함된 금액)의 10%를 납부하면 됨.
- 위택스(www.wetax.go.kr)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
 -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참고



법인지방소득세 개요

01 과세체계 개편(독립세 전환)

· '14년 이후 소득 발생분 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세율 등에 따라 계산하여 신고·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.

2013년 귀속분까지 <부가세 방식>	2014년 귀속분부터 <독립세 방식>
법인세 결정세액 × 부가세율(10%)	법인세 과세표준 × 세율(지방세법 §103조의20) - 공제·감면(지방세특례제한법)

02 세율(지방세법 §103조의20)

과세표준	속산법		세법상 계산법
	세율	누진공제액	
2억원 이하	1%	-	과세표준 × 1%
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	2%	200만원	200만원 + (2억원 초과 × 2%)
200억원 초과	2.2%	4,200만원	3억9,800만원 + (200억원 초과 × 2.2%)

03 세액 계산(지방세법 §103조의21)

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	= (과세표준 × 세율) +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 +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
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세액	= 산출세액 - 공제·감면세액 ⁽¹⁾ + 가산세 ⁽²⁾ + 추가납부세액 ⁽³⁾ - 기납부세액 ⁽⁴⁾ ± 경정·수정신고 등 가감액 ⁽⁵⁾

- 1) 조합법인 등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·감면 규정 없음
- 2)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
- 3)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%
- 4)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
- 5) '13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경정·수정신고로 인해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세액

04 제출서류(지방세법 §103조의23)

구분	제출 서류	서식
신고서	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	43호
첨부 서류	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43호의2
	안분명세서	44호의6
	공제(감면)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	43호의3
	가산세액 계산서	43호의4
	특별징수세액명세서	43호의5
	재무상태표, 포괄손익계산서, 이익잉여금처분(결손금처리)계산서	
	현금흐름표 (외부감사 대상 법인만)	
소급공제 환급신청서(해당 법인만)	43호의9	

※ 특별징수세액을 본점 소재 자치단체에 일괄 환급 신청시 특별징수명세서(42호의4) 제출 필요

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·구 세무(재무)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군·구	전화번호	군·구	전화번호	군·구	전화번호	군·구	전화번호	군·구	전화번호
중 구 청	본청 760-7240	남구청 880-7460		남동구청 453-2380		서구청 560-4920		강화군청 930-3925	
	영종 760-7720								
	용유 760-8923								
동 구 청	770-6290	연수구청	749-7500	부평구청	509-6280	계양구청	450-5181	옹진군청	899-2418